

장기투자를 위한 올바른 선택

골드만삭스 글로벌리츠(Global REITs)재간접투자신탁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골드만삭스 글로벌리츠(Global REITs) 재간접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하여 ‘골드만삭스자산운용주식회사’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드만삭스 글로벌리츠(Global REITs) 재간접투자신탁

투자신탁명	골드만삭스 글로벌리츠(Global REITs) 재간접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명	골드만삭스자산운용(주)
해외위탁 자산운용회사명	맥쿼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Macquarie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판매회사명 및 상담가능 전화번호	<p>국민은행(☎1588-9999, www.kbstar.com)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굿모닝신한증권 (☎1600-0119, www.goodi.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교보증권 (☎1544-0900, www.iprovest.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광주은행 (☎1588-3388, www.kjbank.com)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농협 (☎02-2080-5114, www.nonghyup.com) /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75 대구은행 (☎1588-5050, www.dgb.co.kr) /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2-118 동부증권 (☎02-369-3000, www.winnet.co.kr)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동양종합금융증권 (☎02-3770-2000, www.myasset.com)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85 미래에셋생명 (☎1588-0220, www.miraeassetlife.com)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68 미래에셋증권 (☎02-3774-1700, www.miraeasset.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메리츠종합금융 (☎02-777-7711, www.imeritz.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 부국증권 (☎02-784-1010, www.bookook.co.kr)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브릿지증권 (☎1566-0900, www.bridgefn.com)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2 신영증권 (☎02-2004-9000, www.shinyoung.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유진투자증권 (☎02-368-6114, www.eugenefn.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외환은행 (☎02-3709-8000, www.keb.co.kr)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81 조흥은행 (☎02-2020-2114, www.chb.co.kr)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81 키움닷컴증권 (☎1544-9000, www.kiwwom.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하나은행 (☎1588-1111, www.hanabank.com) /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하나대투증권 (☎1588-3111, www.daetoo.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한국투자증권 (☎1599-0114, www.truefriend.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한화증권 (☎02-3772-7000, www.kroeastock.co.kr)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HMC투자증권 (☎02-3787-2114, www.hmcib.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3 HI투자증권 (☎051-554-5111, www.hi-ib.com)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153-10 SK증권 (☎02-3773-8245, www.priden.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p> <p>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p> <p>※ 판매회사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p>
작성기준일	2008년 12월 1일
투자설명서 비치·공시 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판매회사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goldman-sachs.co.kr)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1. 투자신탁의 개요.....
명칭, 상품의 존속기간, 투자신탁유형, 자산운용회사, 최초설정일등 연혁, 수탁고 추이
2. 투자정보.....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준가격,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평균 수익률)
3. 수수료·보수, 과세.....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이 펀드를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2.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
3.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이펀드의 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1. 자산운용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운용자산규모, 운용전문인력관련 사항
2. 판매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3. 수탁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5. 채권평가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제 4 부 수익자의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1. 수익자의 권리.....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재판관할,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공시.....
정기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참고> 용어 정리 : 투자설명서에 나온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참고> 펀드 용어 정리.....

※본문에 기울림체로 기재된 단어들은 투자설명서 마지막의 `<참고>펀드 용어 정리`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설명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행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 (본문 1쪽)

- 1. 명 칭 : 골드만삭스 글로벌리츠(Global REITs)재간접투자신탁
- 2. 펀드존속기간 : 추가형이어서 별도의 종료일이 없습니다.
- 3. 분 류 : 재간접투자기구,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 4. 자산운용회사 : 골드만삭스자산운용(주)
(해외위탁운용사 : 맥쿼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II. 투자정보 (본문 2~6쪽)

구 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전세계 증시에 상장된 부동산관련 외국간접투자증권 등에 투자하여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수익을 추구 *비교지수: 50% FTSE EPRA NAREIT Australia KRW hedged index+ 50% FTSE EPRA NAREIT Global ex-Australia KRW hedged index					
2. 주요 투자전략	- 전세계의 상장 REITs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균형 있게 투자 - 환율변동 위험에 대비한 목표 환헤지 비율은 전체 투자자산의 100% 수준					
3. 주요 투자위험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상장된 부동산관련 외국간접투자증권등에 의하여 가격변동 및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2등급으로 높으므로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으며, 글로벌 부동산 시장 변화와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 간접투자기구(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goldmansachs.co.kr) 에서 확인가능					
6.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2008년 11월 20일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중인 펀드수		
	김민구	33세	부장	20	5,907억원	ING 자산운용-주식운용역 랜드만크자산운용-주식운용역
* 운용은 해외자산운용회사에게 위탁하여 해외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문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며, 해외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문인력(작성일 현재 데이비드 키벨)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7.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판매사 영업일 기준 2008.11.20>	이 실적은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Class A	-55.96%	-34.30%	0.00%	-	-15.42%
	Class I	-55.86%	-34.14%	0.00%	-	-17.39%
	Class C	-56.44%	-	-	-	-36.92%
	비교지수	-57.30%	-34.31%	-17.57%	-	-12.75%
비교지수: 50% FTSE EPRA NAREIT Australia KRW hedged index+ 50% FTSE EPRA NAREIT Global ex-Australia KRW hedged index						

III. **매입·환매 관련정보** ((☞본문 9~11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종 류		종류 A	종류 I	종류 C	
수익증권 판매 기준		제한없음	10억이상	없음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 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¹⁾	납입금액의 1%	-	-	
	후취판매수수료 ¹⁾	-	환매금액의 1%	-	
	환매수수료(90일미 만 환매시)¹⁾	-	-	이익금의70%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 수 및 비용 (순자산총액 기준)	보수	운용회사보수	연 0.90%	연 0.90%	연 0.90%
		판매회사보수	연 0.90%	연 0.70%	연 1.90%
		기타보수	연 0.10%	연 0.10%	연 0.10%
		보수합계	연 1.90%	연 1.70%	연 2.90%
	기타비용	연 0.469%	연 0.469%	연 0.469%	
총보수·비용비율²⁾³⁾		연 2.369%	연 2.169%	연 3.369%	

- 주 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90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2)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3) 총보수·비용비율 산정시 피투자펀드의 기타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음.

2. 과세 : 투자자는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인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7.1.1.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 세부사항 본문참조 요함

3. 매입, 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9 시~오후 5 시) 중에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이후
매 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납입 (5시 이전) 수익증권 매입 (D+1 기준가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납입 (5시 이후) 수익증권 매입 (D+2 기준가 적용)
환 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5영업일(D+4)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10영업일(D+9) 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청구 (5시 이전) 기준가 적용 환매대금 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6영업일(D+5)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11영업일(D+10) 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청구 (5시 이후) 기준가 적용 환매대금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점포명)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은)
 는 (고객 성명) 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설명하였습니니다.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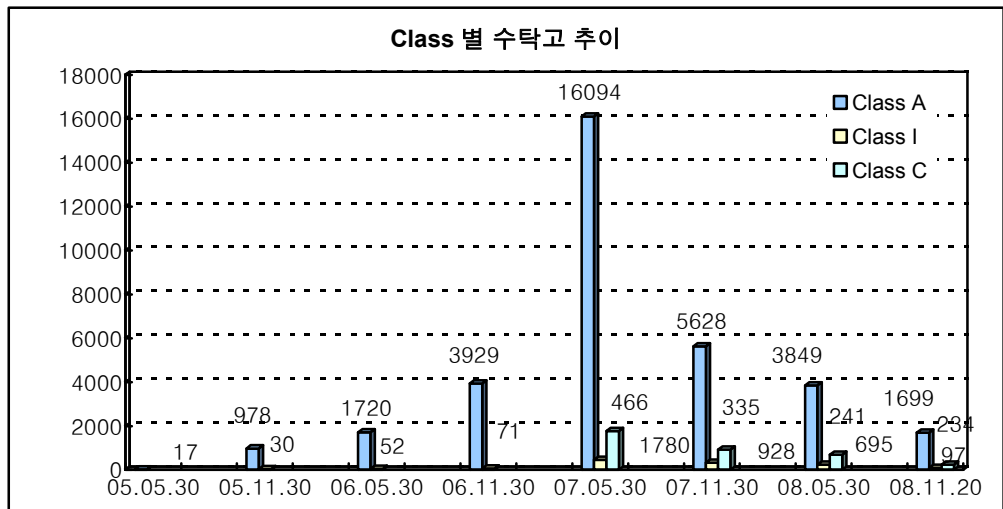
본 상품에의 투자는 **Macquarie Bank Limited (ABN 46 008 583 542)** 또는 맥쿼리은행 그룹 계열사에 대한 예금이나 기타 부채가 아니며, 동 투자는 원금 및 수익의 손실, 환매의 지연 등 투자와 관련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Macquarie Bank Limited** 및 맥쿼리 그룹의 계열사 누구도 특정 수익률이나 펀드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고, 펀드로부터 원금의 환급 또는 펀드의 배분에 대한 과세 방식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맥쿼리 그룹은 **Macquarie Bank Limited** 및 그 전세계 자회사들을 포함합니다.

I. 투자신탁의 개요

- 1. 명 칭 골드만삭스 글로벌리츠(Global REITs)재간접투자신탁
- 2. 펀드존속기간 이 상품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 3. 종 류 재간접투자기구,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 4. 자산운용회사 골드만삭스자산운용(주)
-해외위탁 맥쿼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Macquarie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자산운용사 업무위탁 범위: 이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 주식 등)에 대한 운용업무 위탁
※단, 운용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골드만삭스자산운용에 있습니다.
-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2005년 5월 30일 맥쿼리-IMM 글로벌리츠(Global REITs) 재간접투자신탁 설립, 종류 A 설정
2005년 9월 22일 맥쿼리-IMM 글로벌리츠(Global REITs) 재간접투자신탁 설립, 종류 I 설정
2006년 12월 4일 맥쿼리-IMM 글로벌리츠(Global REITs) 재간접투자신탁 설립, 종류 C 설정
2007년 9월 28일 골드만삭스 글로벌리츠(Global REITs) 재간접투자신탁으로 명칭 변경

6. 수탁고 추이
(판매사 영업일 기준
2008.11.20)

[단위:억원]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전세계 상장된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 주식)등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여 투자자산의 가치 증대

- 이 투자신탁은 외국법령에 의해 상장된 부동산관련 외국간접투자증권등에 투자신탁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투자신탁으로, 호주, 미국 REITs, 기타지역의 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해외 재간접투자신탁입니다.

- 그러나 당해 회사는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나 운용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비교지수의 변경

1) 1차 변경

- 변경일자 : 2007년 4월 15일

- 변경전 : 50% UBS Australia Investors Index+ 50% UBS Global(ex-Australia) Investors Index

- 변경후 : 50% FTSE EPRA/NAREIT Australia+ 50% FTSE EPRA/NAREIT Global ex Australia hedged in US\$

- 변경사유 : UBS지수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음으로 블룸버그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수를 발표하는 FTSE 지수로 변경

2) 2차 변경

- 변경일자 : 2007년 6월 30일

- 변경전 : 50% FTSE EPRA/NAREIT Australia+ 50% FTSE EPRA/NAREIT Global ex Australia hedged in US\$

- 변경후 : 50% FTSE EPRA NAREIT Australia KRW hedged index+ 50% FTSE EPRA NAREIT Global ex-Australia KRW hedged index

- 변경사유 : 당 펀드는 자산총액의 90%~110%까지 환 헤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 헤지된 지수를 산출이 어려웠으나, 2007년 6월 30일부터 FTSE에서 FTSE EPRA NAREIT Australia index 및 FTSE EPRA NAREIT Global ex-Australia index의 원화로 헤지한 지수를 발표함에 따라 헤지된 지수로 변경함

※비교지수= 50% FTSE EPRA NAREIT Australia KRW hedged index + 50% FTSE EPRA NAREIT Global ex-Australia KRW hedged index

(비교지수 및 펀드 수익률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매월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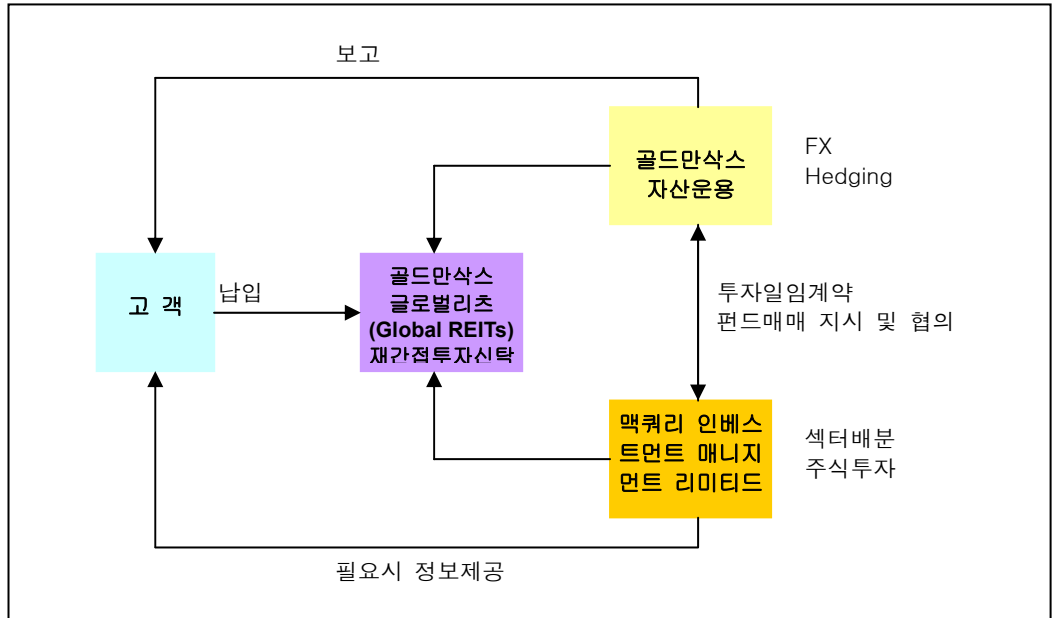
상장된 부동산 관련 외국간접투자증권등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

● 골드만삭스 글로벌리츠재간접투자신탁

- 이 투자신탁은 외국법령에 의해 상장된 부동산관련 외국간접투자증권등에 투자신탁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투자신탁으로, 호주, 미국 REITs, 기타지역의 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해외 재간접투자신탁입니다.

※ 환헤지 =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인 경우, 순자산 평가액의 100% +/- 10% 수준

-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주) (이하 “자산운용회사”)이고, 외국통화 표시자산(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대한 운용업무는 [2005.04]에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에 의거 맥쿼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리미티드가 담당합니다.



(1) 해외 유가증권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중장기적으로 투자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고자,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 주식)에 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간접투자증권 및 주식은 여러 증권거래소(뉴욕, 홍콩, 호주, 런던 등)에 상장되어 거래됩니다.

-배당, 배당의 지속성, 이익 상승, 배당 과세, 수익의 성장, 유동성 및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각 종목의 국가, 정치, 산업적 요인 검토를 바탕으로 투자전략 수립

-미래 현금흐름 및 수익성에 대한 세부적인 bottom-up 분석을 통한 포트폴리오 구성

(2) 국내 유가증권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일부를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 자산에 투자·운용하여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3) 환위험 관리전략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 헤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순자산 평가액의 100%의 +/- 10% 범위로 환헤지

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 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의 기본목적은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13~15 페이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1.투자전략’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투자 위험

(1) 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미국, 호주 등의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 주식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운용성과는 동 주식의 가격변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의 특별한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유가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 주식등은 미국달러, 호주달러 등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되는 위험을 말합니다. 비록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해서 +/-10% 이상의 환헤지를 실행할 예정이지만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손실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3) 유동성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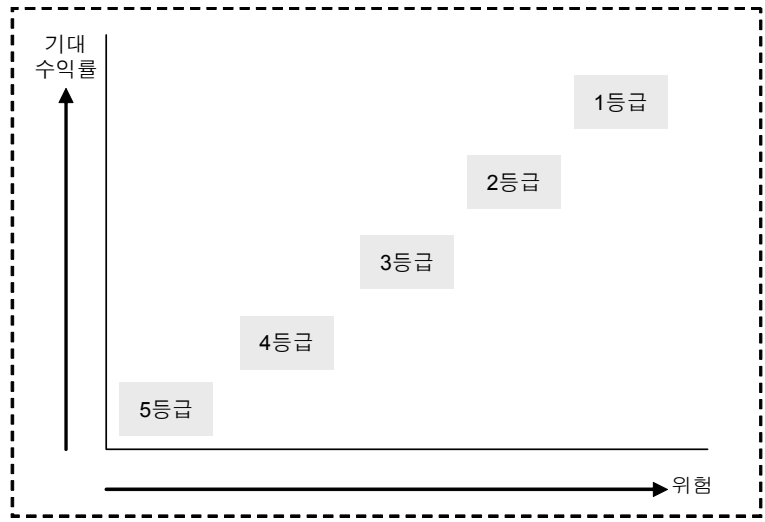
거래량이 적은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유동성 부족으로 신탁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운용에 의한 손익은 모두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15~21 페이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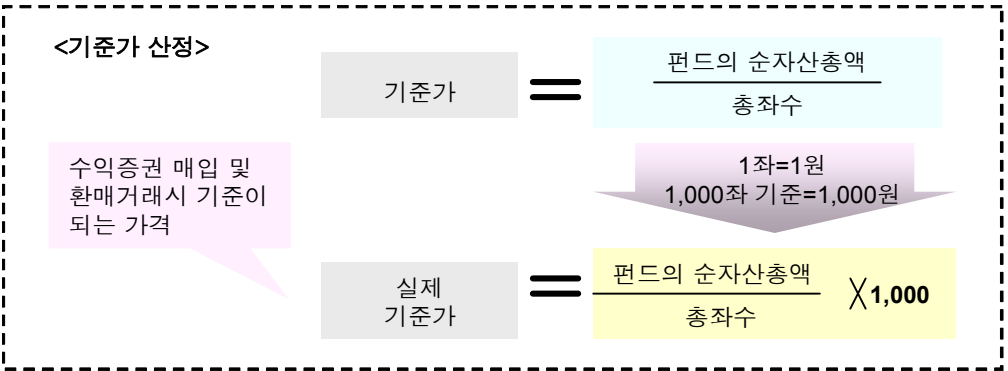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로 전세계 시장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 주식)등에 투자하며 국내 및 국외의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5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이를 잘 인식하는 투자자로서 높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위험등급	자산운용사의 운용중인 투자신탁 상품 (예시)
1 등급	골드만삭스제갈공명주식투자신탁
2 등급	골드만삭스글로벌리츠(Global REITs)재간접투자신탁
3 등급	골드만삭스더블찬스채권혼합투자회사
4 등급	골드만삭스프라임채권투자회사
5 등급	국공채 채권펀드 및 MMF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간 판매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자산운용회사(www.goldman-sachs.co.kr) · 판매회사 ·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인터넷홈페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소속부서	직위	운용중인 자산 규모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David Kivell	Real Estate Securities Team	펀드매니저	US \$37억달러	Growth Equities Mutual Property Securities Fund

※ 이 펀드의 운용은 맥쿼리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의 펀드매니저 David Kivell이 운용합니다.

성명	소속부서	직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김민구	글로벌 운용팀	부장	연세대 경영학과 ING자산운용 - 주식운용역 랜드마크자산운용 - 주식운용역

※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8 페이지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1.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투자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 (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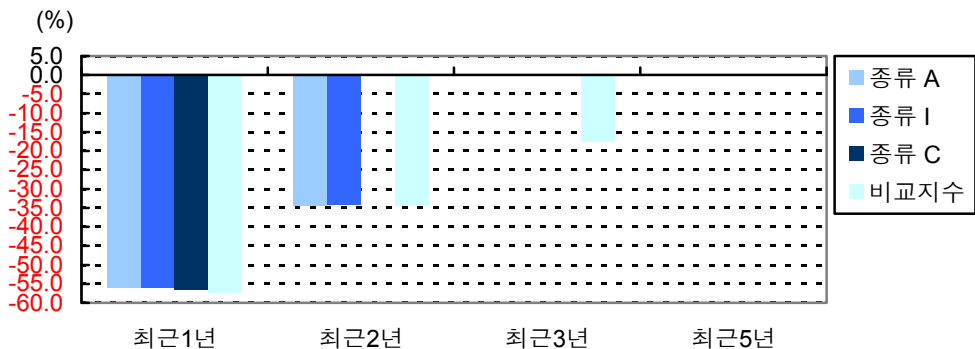
(판매사 영업일 기준
2008.11.20)

(1) 연평균 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1년 07.11.21 ~ 08.11.20	최근2년 06.11.21 ~ 08.11.20	최근3년 05.11.21 ~ 08.11.20	최근5년	설정일 이후 05.05.30 ~ 08.11.20
투자신탁 (종류 A)	-55.96	-34.30	0.00	-	-15.42
투자신탁 (종류 I)	-55.86	-34.14	0.00	-	-17.39
투자신탁 (종류 C)	-56.44	-	-	-	-36.92
비교지수	-57.30	-34.31	-17.57	-	-12.75

※ 비교지수 산출방법 50% FTSE EPRA NAREIT Australia KRW hedged index+ 50% FTSE EPRA NAREIT Global ex-Australia KRW hedged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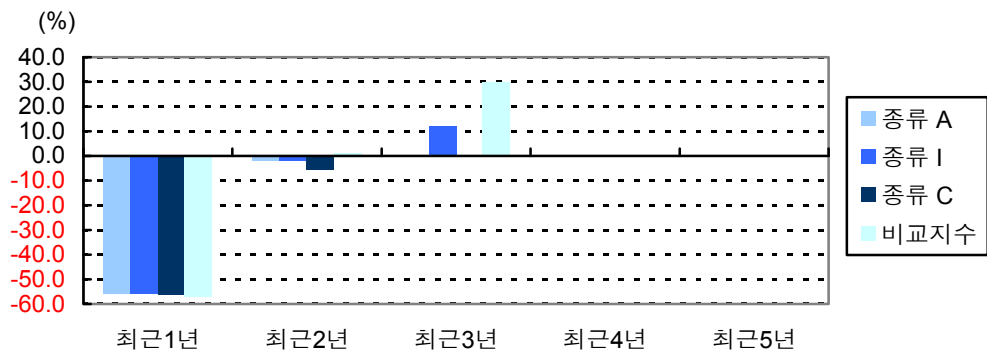
(2)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 %)

구분	최근1년 07.11.21 ~ 08.11.20	최근2년 06.11.21~ 07.11.20	최근3년 05.11.21 ~ 06.11.20	최근4년	최근5년
투자신탁 (종류 A)	-55.81	-1.97	0.00	-	-
투자신탁 (종류 I)	-55.71	-1.75	0.00	-	-
투자신탁 (종류 C)	-56.29	-5.26	-	-	-
비교지수	-57.14	1.05	29.82	-	-

※ 비교지수 산출방법 50% FTSE EPRA NAREIT Australia KRW hedged index+ 50% FTSE EPRA NAREIT Global ex-Australia KRW hedged index

주1)마지막 측정대상 기간의 수익률은 해당기간의 수익율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였음.



III. 수수료 · 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연평균금액의 %)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I	종류 C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없음	없음	매입시
후취 판매수수료	없음	180일미만시 이익금의 70%	없음	-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없음	없음	90일미만시 이익금의 70%	환매시 1회

주)Class는 선취 판매수수료 따라 구분하였으며, 종류A는 선취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종류C의 경우 판매보수가 종류A보다 더 높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	비고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I	종류 C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0.90%	연 0.90%	연 0.90%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연 0.90%	연 0.70%	연 1.90%	매 3개월 후급
수탁회사 보수	연 0.06%	연 0.06%	연 0.06%	매 3개월 후급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0.04%	연 0.04%	연 0.04%	매 3개월 후급
기타비용 ¹⁾	순자산총액의 연 0.469%	순자산총액의 연 0.469%	순자산총액의 연 0.469%	사유발생시
총 보수·비용 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2.369%	순자산총액의 연 2.169%	순자산총액의 연 3.369%	
총보수 • 비용 비율 ²⁾ (피투자 간접투자기구 보수 포함 ³⁾)	연간보수 약 2.369%	연간보수 약 2.169%	연간보수 약 3.369%	

1)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직전 회계년도(2006년 5월 30일 ~ 2007년 5월 29일)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음.

2)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 간접투자기구에서 부과하는 보수를 포함한 비율로서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수·비용 수준을 나타냄. 다만, 피투자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기타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음.

3) 피투자펀드보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할 예정인 리츠 펀드(이하 "피투자펀드")는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피투자펀드의 순자산가격으로 거래되지 않고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의해 매매되므로 이 투자신탁에서 피투자펀드에 직접 지급하는 보수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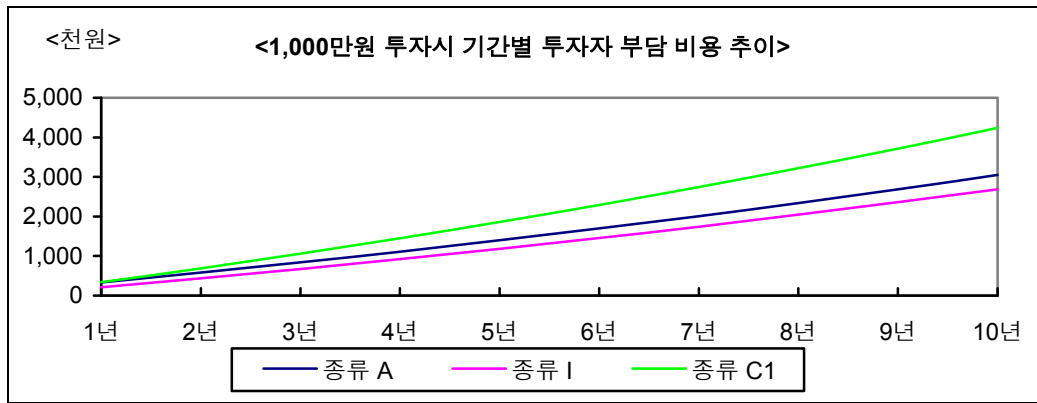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누적)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천원)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A	335	839	1,396	3,050
종류 I	213	674	1,182	2,690
종류 C	337	1,062	1,862	4,237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 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환급비율 : (사업연도 총소득 - 국내비과세소득)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 으로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 (나)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이익보다 2007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손실이 더 큰 경우 (∵ 2007년 6월 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하여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 평가 이익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 · 환매,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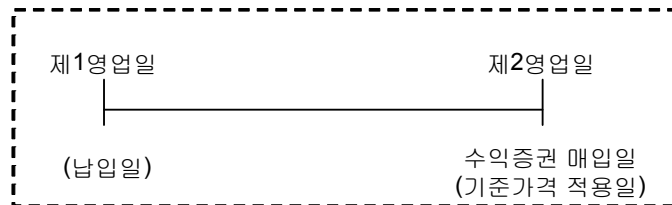
1. 매입

(1) 매입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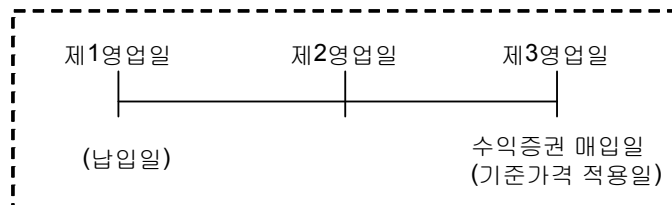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표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24 페이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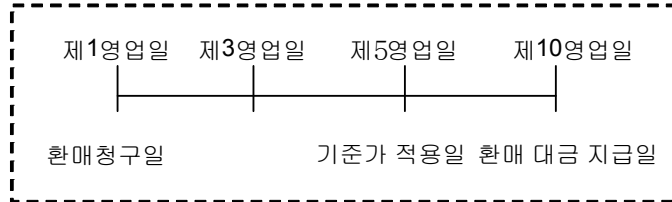
2.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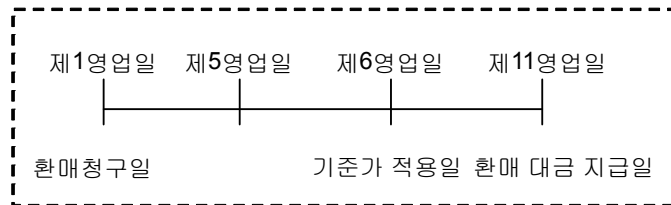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 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5 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10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나) 오후 5 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6 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11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24.25 페이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 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지급비율(연평균가액의 %)			비고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I	종류 C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	-	-	환매시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가 17 시[오후 5 시]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상장된 부동산 관련 외국간접투자증권등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

- 이 투자신탁은 외국법령에 의해 상장된 부동산관련 외국간접투자증권등에 투자신탁의 50%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투자신탁으로, 호주, 미국 REITs, 기타지역의 REITs 및 부동산 개발회사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해외 재간접투자신탁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 관련 유가증권 등)에 대한 운용업무는 투자일임계약에 의거 맥쿼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리미티드가 담당하고 있으며 위탁운용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외운용회사 변동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

한편, 선도환거래 또는 선물환거래를 통해 글로벌 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 관련 유가증권 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위험을 일부 헤지할 예정입니다. 헤지 비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외유가증권 투자전략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기초 여건 및 개별 산업에 대한 심층분석 토대로 우량 종목에 투자

이 투자신탁은 중장기적으로 투자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고자, 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관련 간접투자증권 및 주식에 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간접투자증권 및 주식은 여러 증권거래소(뉴욕, 홍콩, 호주, 런던 등)에 상장되어 거래됩니다.

<투자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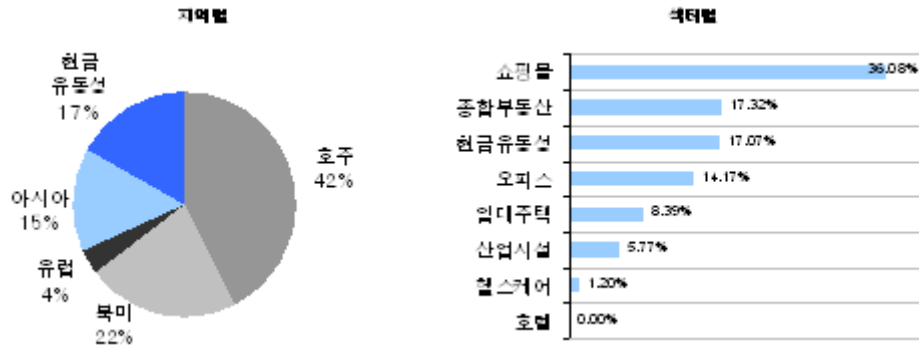


- 지역별 자산배분: 정성적 분석 및 정량적 분석을 기초로 지역별 배분의 토대가 되는 포괄적인 총 수익 순위를 만들어 냄, 이익 배당과 성장이 주요 변수이지만 수익률 차이, 거시적 지표들 및 지역별 부동산 시장 원리와 지역별 요인들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주요 특징

- 종목선택 및 포트폴리오 구성: 지역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종목을 구성, 시장과의 상관관계 및 시장의 성숙도에 따른 종목 선정 및 종목 구성, 지역별 시장 성숙도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

- 포트폴리오 관리: 당사의 리스크 팀에 의해서 매일 포트폴리오를 모니터링 실시(Daily), 리스크 점검(지역별 비중 / 종목 비중 / 현금 보유 비율 / 비교지수 보유 비중 / 비교지수 수익률 오차)

<자산배분 현황>



- 자료 출처: 골드만삭스자산운용, 기준일: 2008년 10월 31일

<투자대상 상위 10개 종목>

종목	비중	업종	지역
WESTFIELD GROUP	19.80%	쇼핑몰	호주
CFS Retail Property	7.78%	쇼핑몰	호주
STOCKLAND TRUST GROUP	6.51%	종합부동산	호주
Goodman Group	3.29%	산업시설	호주
SUN HUNG KAI PROP	2.43%	임대주택	홍콩
MITSUBISHI ESTATE	2.23%	오피스	일본
MITSUMI FUDOSAN CO	1.85%	종합부동산	일본
Dexus Property Group	1.68%	종합부동산	호주
ESSEX PROPERTY TRUST	1.67%	임대주택	미국
VENTAS	1.31%	종합부동산	미국

- 자료 출처: 골드만삭스자산운용, 기준일: 2008년 10월 31일

국내유가증권 투자전략

유동성 자산 위주의 안정적인 투자전략 구사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일부를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 자산에 투자·운용하여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환위험 관리 전략

통화 선물, 통화스왑, 선물환거래, 선도환거래 등을 이용하여 환위험의 90%~110%수준 헤지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 관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성, 헤지수단 및 헷지 비용등을 고려하여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환헤지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헤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순자산 평가액의 90%~110%수준에서 환헤지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헤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

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용은 목표 헤지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는 환헤지의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하여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 투자위험

(1)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재산의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투자금액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당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주로 해외 상장 인프라 펀드 혹은 주식)의 실적에 따라 투자신탁의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각 펀드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인프라 관련 종목의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은 정부정책, 경기사이클, 개별기업 및 Fund의 수익성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외부 변수들의 변화는 투자신탁재산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외국통화표시 자산으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을 방어(헤지)할 예정이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 및 시간차이에 따라 투자수익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외국 상장 인프라 종목에 편입된 인프라 자산의 매매가 어려워 공정 가격에 적당한 시간을 갖고 Rebalancing 및 청산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가입과 환매가 자유로운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외국간접투자증권의 특성상 환매기간이 다른 투자신탁보다 길게 소요됩니다. 환매신청일로부터 판매회사의 영업일 기준으로 10영업일 후에 환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의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미래가격입니다. 즉, 투자자가 환매 청구하는 시점과 기준가격이 정해지는 시점의 차이로 인해 순자산가치가 투자자의 예상과 다르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규제와 정치적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전세계에 걸쳐 분산투자 되므로 해당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의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이 투자신탁은 법규정 테두리 안에서 헷지, 대안투자로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파생상품시장의 변동성이 클수록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해외 인프라 자산은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금리 상승에 따라 자산가치 하락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인프라 자산은 참여자가 한정된 시장입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파산이나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술적 위험	인프라 종목은 다량의 고정비를 지출하고, 기초 시설을 건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건설 기간중에 생기는 기술의 변화 및 발전은 인프라 자산의 건설기간 중 발행인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 타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 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 위험	Goldman Sachs 는 그 계열사 및 직원을 포함, 세계적인 풀 서비스 투자 은행, 브로커-딜러, 자산운용 및 금융 서비스 조직이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참여자입니다. 그 결과, Goldman Sachs 는 여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가 사업으로 인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험 배분	자산운용회사는 일반적으로 수시로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한 위험배분에 따라 투자신탁의 다양한 투자자산 및 전략간 투자신탁의 자산을 배분하고자 하며, 수시로 운용사 임의 재량에 따라 이러한 배분을 재조정합니다.
목표 가격변동성에 관한 위험	자산운용회사는 목표 가격변동수준을 매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가격변동 수준이 연평균 목표 가격변동수준에 밀접한 범위 이내에 있지 않은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펀드가 이 목표를 준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수익권 유동성 제한 환매 위험	투자신탁의 투자자산은 환매 제한에 따라, 수익자는 일정기간동안 환매가 제한됨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의 경제적인 부담에 대비해야 합니다.
투자 및 거래 위험	투자신탁의 투자는 투자전액의 손실 위험을 포함하여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투자신탁에 의한 모든 투자는 자본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신탁이 모든 자본을 적절한 투자기회에 알맞게 배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분산 위험 및 집중투자 위험	투자신탁은 특정 시점에 투자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전반적 포트폴리오 구성의 변화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한 결과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제한된 수익 발행인, 투자대상, 산업 및 시장에 상당한 포지션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은 가치가 하락하는 단일 발행인 또는 특정 유형의 투자자산에 상대적으로 큰 포지션을 보유하는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 있고, 부정적 시장 반응 없이 투자자산을 유동화할 수 없거나 그밖에 투자자산이 시장 상황 또는 환경의 변화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그 손실은 훨씬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이 사용하는 투자전략 변동 위험	자산운용회사는 수시로 운용사 임의 재량에 의해 수익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다양한 투자전략을 이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의 제한된 유동성 위험	투자신탁은 자산의 일부를 유동성이 낮은 유가증권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증권 및 금융상품은 쉽게 처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경우 특정한 시기 동안 계약, 법률 또는 규제당국에 의해 처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관련펀드 투자에 대한 위험	투자신탁은 여러 개의 동일전략을 구사하는 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거래의 구조, 법률 요건(ERISA가 부과한 제한 포함), 사용가능한 현금 및 조세나 기타 고려사항으로 인해 투자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레버리지, 금리, 마진 위험	투자신탁은 투자프로세스에 의해 상당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의 가격변동성을 증가시킵니다. 신용에 의한 증권 거래는 선물 거래와 달리 이자수수료를 발생시키며, 거래활동에 따라서는 이러한 수수료가 상당할 수도 있습니다.
콜 옵션 위험	콜 옵션의 매매와 관련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커버되는 (즉 매도인이 기초자산인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콜옵션의 매도인(발행인)은,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이 수령한 프리미엄을 공제한 기초자산 매입가격 이하로 하락할 위험을 부담하며, 기초자산의 가격이 옵션 행사가격 이상으로 상승할 때 기초자산에서 수익을 얻을 기회를 포기합니다. 커버되지 않는 콜옵션의 매도인은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이 옵션 행사가격 이상으로 이론적으로는 무제한 상승할 위험을 부담합니다.
풋 옵션 위험	풋 옵션의 매매와 관련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커버되는 (즉 발행인이 기초자산인 유가증권에 대해 매도포지션을 취하는) 풋옵션의 매도인(발행인)은,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이 수령한 프리미엄을 더한 (매도포지션을 취할 때의) 기초자산 매도가격 이상으로 상승할 위험을 부담하며, 기초자산의 가격이 옵션 행사가격 이하로 하락할 때 기초자산에서 수익을 얻을 기회를 포기합니다. 커버되지 않는 풋옵션의 매도인은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이 옵션 행사가격 이하로 이론적으로는 무제한 하락할 위험을 부담합니다.
높은 변동성을 가진 시장 위험	투자신탁의 자산이 투자될 수 있는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은 이자율, 수급관계변경, 거래, 회계, 통화 및 환율 통제 프로그램, 정부 방침 및 국내 및 국제 정치 및 경제적 사건 및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 위험	투자신탁은 투자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선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물포지션은 일부 상품거래소가 '일별 가격변동한도' 또는 '일별한도'로 언급되는 규정에 의하여 하루동안의 선물계약가격의 가격변동을 제한함으로써 인하여 비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선도계약 위험	투자신탁은 장외에서 거래되며 일반적으로 정량화되지 않는 선도계약 및 그에 대한 옵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선도계약에 대한 일별 가격변동제한은 없습니다.
스왑계약 위험	투자신탁은 스왑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스왑은 다양한 형태의 위험과 관련이 있으며, 여기에는 시장위험, 유동성 위험, 구조화 위험, 조세위험 및 거래상대방의 재무건전성과 신용도에 관한 위험을 포함한 거래상대방 불이행 위험을 포함합니다.
파생상품 일반위험	투자신탁은 투자프로세스에서 파생상품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소한 그 성과의 일부가 기초자산의 성과, 지수 또는 이자율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입니다. 투자신탁이 파생상품을 사용하면 직접 유가증권 또는 더욱 전통적인 투자상품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위험과는 다르면서 훨씬 클 수도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파생상품과 투자신탁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특징에

	좌우됩니다.
고위험 고수익 및 기타 채권과 관련한 파생상품 위험	고위험 고수익 채권 보유와 관련한 신용위험에 추가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고수익 및 기타 채권과 관련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신탁은 통상적으로 채권 발행인이 아닌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과만 계약 관계를 가집니다. 투자신탁은 일반적으로 발행인이 파생상품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직접적으로 강제할 권리가 없으며, 발행인과 상계할 권리, 채무에 대하여 의결권을 지닐 권리도 없습니다.
이머징 마켓 위험	자산운용회사는 이머징 마켓 정부의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비미국 정부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신탁의 투자가 주로 선진국 정부에게 이루어지지만, 자산운용회사는 운용사 임의 재량으로 투자신탁 자본의 일부를 신흥시장국 정부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헤지 거래 위험	투자신탁은 헤지기법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헤지기법은 선물계약, 장내 및 장외 유가증권 풋옵션 및 콜옵션, 금융지수, 선물환계약 및 여러 금리 거래 등 여러가지 파생거래(통칭, "헤지 상품")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기업/제한된 운영 경험 위험	수시로 투자신탁 자산의 중요한 부분이 소기업이나 최근 설립된 회사의 유가증권에 투자될 수 있으며, 반대로 투자신탁은 이러한 유가증권에 대한 중요한 매도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은 일반적으로 투자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대기업 보다 투자자가 적습니다. 그 결과, 소기업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기 쉽고 수익 면에서 평가절하 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의존도;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운용에 참여하지 않음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투자프로세스에 의해 운용합니다. 투자신탁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투자신탁의 투자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이를 이행할 자산운용회사의 능력에 좌우됩니다.
투자운용과정	자산운용회사는 일반적으로 정량적 투자과정을 사용하며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여러 모델과 투자전략을 사용합니다. 회사 투자활동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델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자산운용회사의 능력에 좌우됩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위험; 투자자에 관한 정보 공개	투자신탁에 불리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 조세 및 규제당국의 변경이 투자신탁의 기간중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 또는 그 계열사, 또는 기타 투자신탁이나 자산운용회사의 서비스제공회사나 대행회사는 투자신탁이 투자하거나 공개당사자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하거나 관할권을 주장하는 일부 국가의 규제당국에게 투자신탁 지분의 특정 비율 이상을 실제로 소유한 수익자의 이름을 포함 투자신탁과 수익자에 관한 정보 공개를 수시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대금 수령 전 거래	적용 법률상 허용되는 정도까지, 투자신탁은 운용사 임의 재량으로 해당 수익권에 대한 필수 청약대금 수령 전에 투자자들에게 수익권을 조건부로 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배정에 근거하여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은 청약대금의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의 결과 발생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공매도	투자신탁은 공매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소유될 수 있거

	<p>나 소유될 수 없는 유가증권을 매도하고 매입인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동일한 유가증권을 차입하는 것과 관련되며, 그 후에 차입한 유가증권을 돌려 갚을 의무를 지닙니다.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유가증권 하락시에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기초유가증권의 가격은 이론적으로 무한하게 증가할 수 있고 매도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해 이러한 유가증권 매입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는 이론적으로 무한한 손실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통화 거래	<p>투자신탁에 다양한 통화간 전환과 관련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빈번한 거래 및 매출액	<p>GSAM은 자산운용회사로서 통화, 유가증권 및 기타 투자자산에 대하여 빈번한 거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빈번한 거래는 일반적으로 높은 거래 비용을 초래하며, 이는 투자신탁의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p>
발행인 위험	<p>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의 발행인은 종종 높은 수준의 사업 및 경영위험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회사는 개발초기단계에 있거나, 검증된 영업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영업 손실이 있거나, 영업 성과에 큰 변동이 있거나, 상당한 쇠퇴위험을 가진 상품과 연관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영업지원, 확장을 위한 재무조달 및 경쟁적 우위 유지를 위해 상당한 추가자본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달리 취약한 경영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p>
대량 환매 위험	<p>투자신탁은, 집중된 기간 동안 수익자가 요청한 대량 환매로 인해, 환매 자금 조달을 위해, 그리고 작은 자산 기반을 반영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달성하기 위해, 바람직한 것보다 더 빨리 특정 투자자산을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투자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자산운용회사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고 환매된 수익증권 및 잔존한 발행 수익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제한된 운영경험; 계열펀드의 과거 성과	<p>투자신탁은 장래 투자자들이 투자신탁의 성과 가능성을 평가할 때 참고하는 운영경험을 제한적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투자 프로세스와 유사하거나 다른 투자프로세스이 있는, 다른 투자 펀드나 Goldman Sachs가 운영하는 펀드의 성과는 투자신탁이 달성할 수 있는 성과를 나타내지 않습니다.</p>
지속적인 수익권 모집에 적용되는 특별 고려사항	<p>투자신탁은 자신이 결정한 바와 같이 약관에 따라 추가 청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수익권의 매입은 매입 이전에 투자신탁의 투자 포트폴리오 내 기존 수익자들의 간접적인 이익을 희석시키며, 만약 향후 투자신탁의 투자가 기존 투자신탁 투자보다 성과를 못 내는 경우 투자신탁의 기존 수익자들의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p>
법률자문인	<p>투자신탁은 자문을 받기 위하여 법률자문인("자문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자문인은 자산운용회사, 판매대행회사 및 계열사의 법률자문인으로 행위합니다. 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 판매대행회사 및 계열회사의 진술과 관련하여, 자문인은 수익자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은 수익자를 대표하기 위하여 어떠한 독립 자문인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p>
단기금융상품 및 기타 유동상품	<p>투자신탁은 방어목적 또는 그 외의 목적으로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정수익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및 단기금융 펀드에 투자할 수 있거나, 자산운용회사가 정황상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해당 금액</p>

	으로 현금이나 현금 등가물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역환매조건부매계약	투자신탁은 역환매조건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역환매조건부 계약은 어느 당사자가 은행 또는 유가증권 딜러에게 유가증권을 매도하고 동시에 매도 당사자가 특정 일자에 확정 가격으로 (금리를 반영하여) 동 유가증권을 재매입 하는 약정을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일부 목적상 차입의 형태로 간주됩니다.
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 및 증서	주식증권의 가치는 다양한 요소(발행인, 산업 등)로 인하여 변경되며 특정한 경우에는 상당한 손실위험이 있습니다.
우선주, 전환증권 및 신주인수권부증권	투자신탁은 우선주, 전환증권 및 신주인수권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 전환증권 및 신주인수권부증권의 가치는 주식시장의 변동 및 특히 기초가 되는 보통주의 성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	투자신탁은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발행인이 채무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예, 신용위험)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자율 변동, 발행인의 신용도에 대한 시장의 이해, 일반적인 시장유동성(예, 시장위험)과 같은 요소로 인한 가격변동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채권	투자신탁이 취득할 수 있는 (통상 “정크 본드”로 알려진) 고수익 채권 및 기타 채권은 선순위 채권자들에 비하여 후순위입니다. 고수익 채권의 낮은 등급은 발행인의 재무조건이나 일반적인 경제, 금융, 경쟁상, 규제 및 기타 조건의 불리한 변동이 원리금을 지급할 발행인의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기타 채권	투자신탁은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사 임의 재량으로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고 회사 또는, 국가나 정부와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 기타 법인의 투자적격등급 채권 또는 기타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및 후순위 사채; 담보 모기지 채무의 투자적격등급 tranches, 담보 채권 및 담보 대출 채무, 우선주, 사채 및 은행 채권.
유가증권 매입 및 금융부실회사의 기타 채무	투자신탁은 파산이나 기타 구조조정 및 청산절차와 관련한 회사를 포함하여 중요한 재무상 또는 사업상 침체를 겪고 있는 회사들의 유가증권 및 다른 채무를 직간접적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매입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매입은 상당한 수준의 위험과 관련이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어떠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채권 참여	투자신탁은 참여자(“참여”)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참여는 해당 대출채권의 원금 일부 와 동 원금 일부에 대한 이자 전부를 수령할 권리를 나타냅니다.
브로커, 거래상대방 및 거래소의 불이행	투자신탁은 장내 또는 장외거래 여부를 불문하고 투자신탁이 거래하는 거래상대방 또는 브로커, 딜러 및 거래소의 신용위험에 노출됩니다.
거래상대방 거래 관계 필요성	거래상대방이 마진, 담보, 신용장 또는 다른 신용 보강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장외시장 참여자들은 충분히 신용도가 높다고 믿는 거래상대방과만 거래를 체결합니다.
이행요건	장내거래상품과는 반대로, 선도, 현물 및 옵션 계약과 통화스왑은 트레이더에게 동등한 거래 및 반대 거래와 채무를 상쇄할 권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선도, 현물 또는 옵션 계약 또는 스

	<p>압 체결시 투자신탁은 계약에 의거한 채무를 이행할 것이 요구될 수 있으며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p>
스프레드 거래 위험	<p>투자신탁이 스프레드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스프레드를 구성하는 포지션을 기초로 하는 통화의 가격은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하지 않을 위험 또는 스프레드 포지션이 유지될 기간동안 동일한 정도로 변동하지 않을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투자신탁은 스프레드 포지션의 한 구간 또는 양 구간에 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p>

(2)글로벌부동산 시장 현황

1) 글로벌 리츠 시장 현황

-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및 양호한 부동산 펀더멘탈이 지속됨
- 2008 년도는 조심스러운 전망: 변동성이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미국 경기 둔화, 신용시장의 유동성 문제로 인하여 투자자들은 이러한 요인들이 리츠 펀더멘탈에 하방 위험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
- REIT 실적은 해당 섹터 수익률 회복의 핵심 요소로 대두됨

2)지역별 부동산 시장 현황

- 호주 시장
 -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하락 위험 상존
 -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에 따라 호주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증가에 따라 리츠 수익률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북미 시장
 -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나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함
 - 미국 오피스 공실률은 계속하여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신규 공급 물량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아시아 시장
 - 홍콩 시장을 비롯한 중국의 견조한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양호한 펀더멘탈 지속
 - 싱가포르 시장은 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광객 유치 및 금융 허브 건설 작업이 경제 성장에 일조함에 따라 사무용 오피스 빌딩 및 고급 임대주택에 수요 증가
 - 일본 시장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에 기여할 수 있는 호재로 부족하나, J-REITs 대비 일본 부동산 개발회사의 투자 매력 증가
- 유럽 시장
 - 유럽에서 상위 15 개 오피스 및 쇼핑몰 임대료는 공실률 하락에 따라 상승하고 있음
 - 오피스의 경우, 임대료가 전년대비 9% 상승하였으며, 쇼핑몰의 경우 또한 전년대비 12% 상승
 - 일부 시장에 따라 순자산가치(NAV) 대비 매우 높은 할인율에 거래되고 있으나, 변동성은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시장에 따라 부채비율은 각기 다르며,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일반적인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임
- 자료 출처: 골드만삭스자산운용, 맥쿼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3. 투자대상

* 투자비용은 신탁재산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투자대상	투자비용	주요내용
외국간접 투자증권	50% 이상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부동산과 관련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부동산과 관련된 주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외국 간접

		투자증권등"이라 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 및 12개월 이내에 상장 예정된 증권에 한함.
외국주식	30% 이하	부동산과 관련된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주권(해외주식에 탁증서 포함)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나 출자증권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유가증권의 성질을 구비한 증권(국제적으로 인정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 및 12개월 이내에 상장 예정된 증권)
채권	40% 이하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는 제외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에 준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하며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어음	40% 이하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이상인 것(이에 준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하며 이하 "어음"이라 한다)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 합계액의 15%이하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법제 2조 제 8호에 의거한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시장등에서 거래되는 주식관련 장내파생 상품 (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투자증권의 대여	투자증권총액의 50%이하	
단기대출	금융기관(외국 금융기관 포함)에 대한 단기대여는 30일 이내	
금융기관 예치	금융기관(외국 금융기관 포함)에 대한 예치는 1년 이내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목 및 라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및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다)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라)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 제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간접투자 증권	다음 비율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 승결안 자산운용회사(법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외국간접

	<p>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외국에서 발행 창설 또는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간접투자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자산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인 경우에는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인 경우에는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 	
	다른 재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사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총발행 간접투자증권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 및 채권관련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100%까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 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ETF)의 간접투자증권 등 -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등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II. 자산의 평가

1. 자산의 평가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단, ELW 의 경우 발행회사에서 제공하는 가격으로 평가
상장·비상장채권	2 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 발행 채무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간접투자증권은 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외국간접투자증권 (상장주식, 상장채권 등)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거래되는 외국시장의 최종시가로 평가
비상장 외화표시 유가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을 또는 최종시가.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을 또는 최종시가 고시전에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 가능. 단,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 이용 가능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거래	<p>1) 일반주식매매</p> <p>-거래증권사 :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리서치/프리젠테이션능력, 정보 제공/영업능력, 매매업무수행능력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p> <p>2) 일반채권 매매</p> <p>-중개기관으로서의 안정성, 거래 효율성, 정보제공능력, 업무의 편의성 등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p>
장내파생상품 거래	<p>1)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p> <p>-거래증권사 : 주가지수관련 파생상품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정보/영업능력, 위탁수수료, 매매업무수행능력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p> <p>2)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p> <p>-선물중개사 : 중개기관으로서의 안정성, 거래 효율성, 정보제공능력, 업무의 편의성 등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부여하여 평가</p>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2.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직접 환매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 영업일전일 (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 7 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2)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구체적인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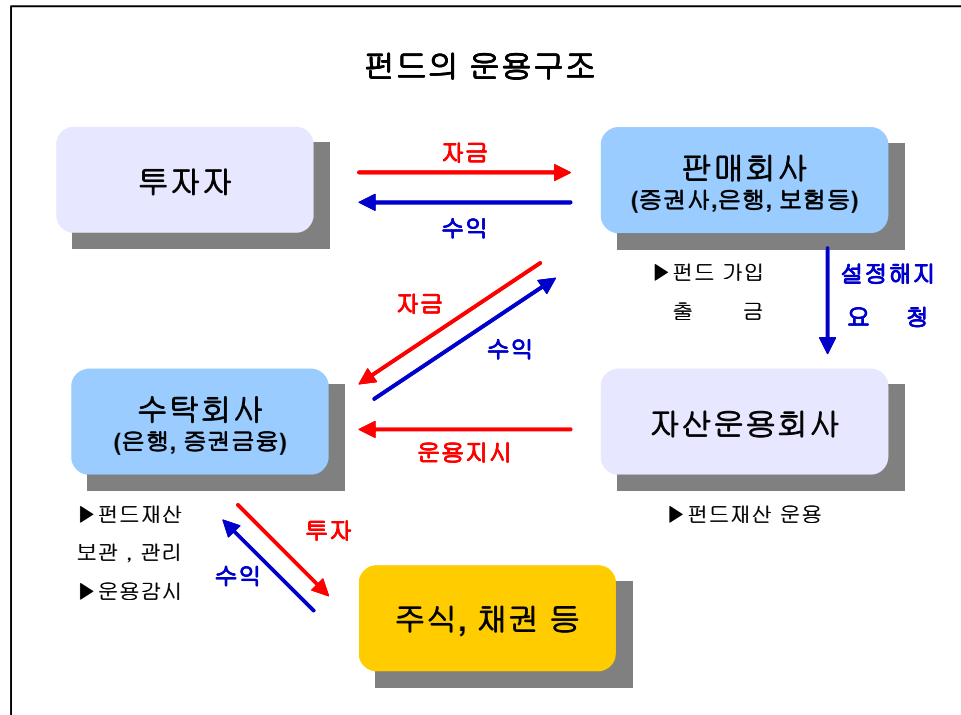
(3)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3. 이익 분배 등 관련 유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1.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골드만삭스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 가 226 흥국생명빌딩 19 층 ☎ 02-3788-1400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 해지/투자신탁의 운용 □ 운용지시/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자산운용회사의 의무와 책임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업무위탁

이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 관련 주식 등)에 대한 운용업무는 투자일임계약에 의거 Macquarie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가 담당하고 있으며 위탁운용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외운용자 변동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

①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의 위탁

- 자산운용회사는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 다음 업무를 위탁합니다.

-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 조사분석업무 / 단순 매매주문업무

②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업무위탁의 책임

-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개요

해외위탁 운용사명	맥쿼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Macquarie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주요주주	맥쿼리 그룹 (Macquarie Group Limited) 100% 소유	
회사연혁	1985	회사설립
운용자산규모	2007년 12월 현재 자산운용규모는 53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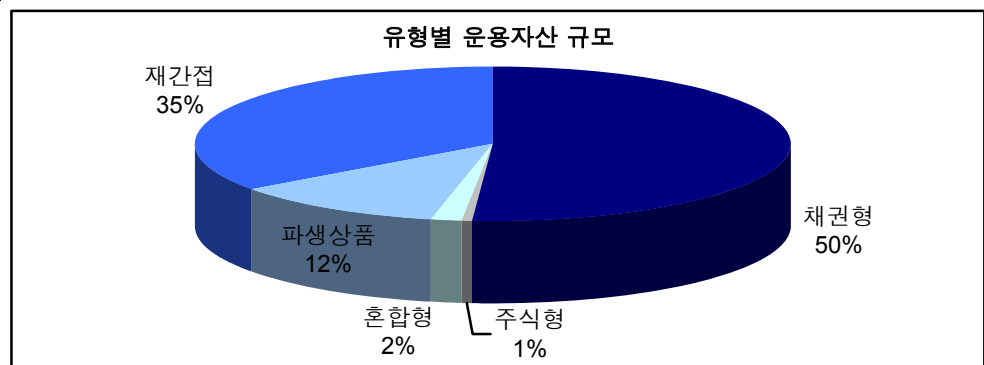
**3. 최근 2사업연도의
요약재무내용**

<요약 대차대조표-단위:억원>			<요약 손익계산서-단위:억원>		
계정과목	2008.3.31	2007.3.31	계정과목	2007.4.1~ 2008.3.31	2006.4.1~ 2007.3.31
고정자산	30,774	19,985	영업수익	28,711	17,975
유동자산	2,753	2,429	영업비용	33,982	12,509
자산총계	33,527	22,414	영업이익	(5,272)	5,466
유동부채	9,238	5,175	영업외수익	28	17
고정부채	0	249	영업외비용	1,635	1
부채총계	9,238	5,424	경상이익	(6,879)	5,482
자본금	21,900	13,000	특별이익	-	-
이익잉여금	(7,464)	3,990	특별손실	-	-
자본조정	-	-	법인세	675	1,529
자본총계	24,289	16,990	당기순이익	(7,554)	3,953

4. 운용자산규모

(2008년 11월 20일 기준, 단위 : 억좌)

구분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단기 금융	파생 상품	부동산	재간접	특별 자산	합계
수탁고	7767	123	231	0	1,792	0	5,319	0	15,232



5. 운용전문인력
(펀드매니저)에
관한 사항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2008년 11월 20일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김민구	33세	부장	20	5,907 억	연세대 경영학과 ING 자산운용 - 주식 운용역 랜드마크자산운용 - 주식운용역	글로벌 운용팀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 펀드매니저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책임 펀드매니저는 설정후부터 08.02.26까지 조규상, '08.02.26부터 '08.02.26부터 '08.11.30 까지 허진욱였으며, '08.12.01부터 김민구가 책임펀드매니저로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판매회사의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펀드매니저

펀드매니저	David Kivell
운용 자산규모	총 US \$ 37 억달러
과거 운용경력	Growth Equities Mutual Property Securities Fund

주) 펀드매니저는 위탁회사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II. 판매회사

1. 회사개요

판매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 1588-9999 -홈페이지 : www.kbstar.com	2001.11.01 합병 국민은행 설립
굿모닝신한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 (02)3772-1200 -홈페이지 : www.goodi.com	1973.04.02 설립
교보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 1544-0900 -홈페이지 : www.iprovest.com	1949.11.22 설립
광주은행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 1588-3388 -홈페이지 : www.kjbank.com	1968.09.17 설립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75 -☎ (02)2080-5114 www.nonghyup.com	1961.8.15 설립
대구은행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2-118 -☎ 1588-5050 -홈페이지 : www.dgb.co.kr	1967.10.07 설립
동부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 (02)369-3000	1982.12.20 설립

	-홈페이지 : www.winnet.co.kr	
동양종합금융증권	서울시 중구 을지로 2 가 185 -☎ (02)3770-2000 -홈페이지 : www.myasset.com	1962.06.04 설립
미래에셋생명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68 -☎ 1588-0220 -홈페이지 : www.miraeassetlife.com	1988.03.07 설립
미래에셋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 (02)3774-1700 -홈페이지 : www.miraeasset.com	1999.12.02 설립
메리츠종합금융	서울시 중구 태평로 1 가 84 -☎ (02)777-7711 -홈페이지 : www.imeritzbank.com	1977.7.13 설립
부국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 (02)784-1010 -홈페이지 : www.bookook.co.kr	1954.8.25 설립
브릿지증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 가 222 -☎ 1566-0900 -홈페이지 : www.bridgefn.com	1954.8.30 설립
신영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 (02)2004-9000 -홈페이지 : www.shinyoung.com	1956. 5.12 설립
유진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 (02)368-6114 -홈페이지 : www. eugenefn.com	1954. 5.12 설립
외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2 가 181 -☎ (02)3709-8000 -홈페이지 : www.keb.co.kr	1967.1 설립
조흥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 가 14 -☎ (02)2020-2114 -홈페이지 : www.chb.co.kr	1897.2.19 설립
키움닷컴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 1544-9000 -홈페이지 : www.kiwoom.com	2000.5 설립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1 가 101-1 -☎ 1588-1111 -홈페이지 : www.hanabank.com	1971.06.25 설립
하나대투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 1588-3111 -홈페이지 : www.daetoo.com	1968.12.16 설립
한국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 1599-0114 -홈페이지 : www.truefriend.com	1974.7 설립
한화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 (02)3772-7000 -홈페이지 : www.koreastock.co.kr	1962.7 설립
HMC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3 -☎ (02)3787-2114 -홈페이지 : www.hmcib.com	1955. 7.26 설립 (2008.4.1 상호변경)
HI투자증권	부산시 동래구 운천동 153-10 -☎ (051)554-5111 -홈페이지 : www.hi-ib.com	1989.10.30 설립

2. 주요업무**(1) 주요업무**

-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환매업무
- 수익증권 교부업무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와 원천징수업무
- 각종 장부·서류 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등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2) 판매회사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동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② 판매회사의 임직원 및 취득권유인은 법제 57 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책임]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II. 수탁회사**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한국씨티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번지
전화번호	(02)3455-2114
홈페이지	www.citibank.co.kr

2. 주요업무**(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등

(2) 수탁회사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수탁회사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수탁회사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간접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아이타스(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전화번호	(02) 2168-0400
회사연혁	2000.01.02 설립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와 책임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자산운용회사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KIS 채권평가주식회사	한국채권평가주식회사	나이스채권평가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삼천리빌딩 2층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 대안빌딩 15층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수익자총회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의 요청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의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수탁회사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2. 잔여재산 분배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의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전성·수익성 및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 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2)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 월에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하나, 간접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 월 이내에 법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약관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게의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신탁약관 제 5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 회 이상 공고

신탁약관 제 49 조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 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장부·서류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1) 수시공시 등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oo 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헤럴드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www.goldman-sachs.co.kr),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단,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의 법령이 정하는 사항

(2) 의결권 행사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용 어	내 용
개방형(간접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 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해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신탁약관에 의거,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간접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주식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증권투자신탁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간접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골드만삭스 글로벌리츠(Global REITs) 재간접투자신탁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신탁 명칭 : _____

판매 일 : _____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에게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위험 포함)을 설명되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